

## 현장조사 여비 · 교통비 지급기준

### □ 지급기준

	구분	지급기준	비고
<b>교통비</b>	철도임	실비 (증빙제출)	KTX 일반실 한도
	항공임		Economy
	선임		1등실
	고속(시외)버스 및 기타 교통수단		TAXI 이용시 2회 이상 환승 또는 신속성을 요구하는 경우에 限 (사유 기재)
	업무용 승용차	유류비 및 통행료(실비)	아래 참조
	<b>일비</b>	30,000원 정액	법정공휴일 · 토요일 : 60,000원
	<b>숙박비</b>	70,000원 한도	1일당 실비

### □ 산정기준

1. 대한민국내 선임손해사정 법인의 본 · 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(市 · 郡단위 기준, 동일 市 · 郡은 편도 50KM 이내)의 여비 · 교통비 중 "일비"만을 지급한다.  
단, 위임인의 요청에 따라 他지역 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한 경우에는 同 「여비 · 교통비 지급기준」 을 적용한다.
  
2. 업무용 승용차 이용시 유류비 : 주행거리 × ℓ 당 요금 ÷ (평균연비)
  - ※ 거리기준 : 네이버 " 추천경로 또는 최단거리" 기준
  - ※ ℓ 당 요금 : 한국석유공사 공시기준 참고 (www.petroleum.or.kr)
    - kWh당 요금 : 173.8원/kWh
      - \*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충전정보(급속-인하후 기준)  
(www.ev.or.kr/portal/chargerfee?pMENUMST\_ID=21629)
    - kg당 요금 : 8,800원/kg
      - \* HyNet 충전소현황(서울 영등포구 H국회수소충전소 기준) (www.hynet.co.kr)
  - ※ 평균연비 : 경유 · 휘발유용 차량 8km/리터
    - LPG용 차량 6km/리터
    - 전기용 차량 6km/kWh
    - 수소용 차량 94km/kg

同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.

3. 대중 교통비 및 숙박비, 통행료는 증빙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한다.

4. 경비 인정기준

경비는 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거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.

① 경비는 1회 업무시간 4시간 이상(이동시간 포함)일 경우에만 인정한다.

② 최종보고서 제출 시 보고서 상 일자별 세부 내역 정리하되, 위임인이 아래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
※필수 기재 사항 : 활동 일자, 활동 일시(시작시간~종료시간), 총 소요시간

활동 장소 및 방문 목적, 세부 활동 내역, 면담(조사)대상자 등

③ 위임인은 경비에 대한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수입인에게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5. 기타 제비용

증빙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하며, 통상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.

6.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인과 사전 협의에 의하여 별도 실비를 정할 수 있다.

7. 계약기간 중 위임인의 시스템(PRM 시스템 등)이 변경되는 경우, 변경된 프로세스 및 기준에 따라서 여비·교통비를 청구하여야 한다.